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26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161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28. C에게 2,99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26.75%, 연체이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C은 2017. 7.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2018. 8.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5953호로 C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3. 법원으로부터 “C은 소외 회사에게 31,701,406원과 그 중 25,974,145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9. 6. 19.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3) 소외 회사는 2019. 6.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2. 4.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8. 1. 24. 피고(피고는 C의 아들과 교제한 바 있다)에게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1615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 상태 등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가.항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1억 32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강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G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C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 4. 2.경,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2019. 6. 9.경(혹은 2019. 6. 10.경) 각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일시경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8. 8. 1.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상, 2018. 8. 1. 비로소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채무불이행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 회사가 2017. 4. 28. C에게 2,990만 원을 대출한 이상, 해당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8. 1. 24.) 이전인 위 2017. 4. 28. 이미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C이 위 대출원리금을 실제로 연체한 시점(채무불이행 시점)을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발생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나아가 C이 2017. 7.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연체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2018. 8.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C이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8. 8. 1.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에서 본 것과 같이 C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피고의 2023. 2. 28.자 준비서면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1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1.14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대 2936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9360분의 103.3802

